



정관

빅토리아 주 한인회 (ABN 51 790 229 817)

준거법 – 빅토리아 주 한인회의 정관은 호주 빅토리아 주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를 준수한다.
본 빅토리아주 한인회 정관은 빅토리아주 협회 설립 개혁법 2012년 - Associations Incorporation Reform Act 2012 (VIC) 46조에 따라 협회와 회원 간의 정관 계약 조건을 준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1) 본회는 '호주 빅토리아 주 한인회' 라 칭한다
- (2)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Victoria' 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 (1) 본회의 목적은
 - (a) 호주 빅토리아 주 멜번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 (b) 호주에서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며 아울러 호주의 문화와 교류하고
 - (c) 호주 빅토리아 주의 이민자 교육 및 취약 층 한인들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 3 조 (위치 및 관할)

- (1) 본회는 Unit 2, 21 - 29 Railway Avenue, Oakleigh Victoria Australia에 위치한다.

제 2 장 협회의 권리와 의무

제 4조 (협회의 권리)

- (1) 본회는 준거법에 따라 협회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 (2) 협회는 제4조(1) 을 제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a) 부동산 또는 개인 자산을 취득, 보유 및 처분하는 행위
 - (b) 금융 기관과의 계좌 개설 및 운영
 - (c) 신탁 자금이 합법적으로 투자 될 수 있는 모든 유가 증권에 자금의 투자
 - (d)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모금하거나 자금을 빌리는 행위
 - (e) 차용한 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이행
- (3) 협회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수입과 자산 (잉여 포함) 을 사용할 수 있다.

제 5조 (비영리 자선단체로의 협회의 의무)

- (1) 협회는 준거법 33조에 따라 협회 운영시 발생하는 잉여금, 소득 또는 협회의 자산을 회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포 할 수 없다.
- (2) 협회는 준거법 4조에 근거하여 협회의 운영자금과 금전적이익을 운용해야 한다.

제 3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성)

-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가입비 (이하 한인회비라 칭한다)를 지불한 날 부터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한국인 및 그의 비한국인 배우자로 한다.
- (3) 본회의 준 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소지한 학생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호주 내 단기 체류 목적으로 거주하는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빅토리아 주 거주 비한국인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등록)

- (1) 협회는 정회원의 회원 등록이후 각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유 유지할 수 있다.
 - (a) 회원의 이름
 - (b) 회원의 주소
 - (c) 회원의 입회 날짜
 - (d) 회원의 연락처
- (2) 법 59조에 의거해 회원 명부의 개인 정보는 특정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
- (3) 법 58조에 의거해 회원 명부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a) 회원은 의결권, 발의권이 주어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b)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c) 회원은 본회의 규칙에 의거 회의록, 기타 본회 관련 문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d) 회원은 정관 및 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한국인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 (e) 회원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협조하는 의무를 갖는다.
 - (f) 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본회에 등록할 의무를 갖는다.

(g) 회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동 종료된다.

제 10 조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투표권을 비롯 어떤 의결권도 가질 수 없으며 피선거권도 갖지 않는다.

제 11 조 (회원탈퇴)

- (1) 정회원은 직접 사임 또는 사망 시 회원의 자격이 종료된다.
- (2) 정회원은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사임할 수 있다.
- (3) 정회원의 자격 상실이 발생하면 협회는 회원 명부에서 해당 정회원의 회원 등록 중단을 기록해야 한다.
- (4) 정회원의 연간 한인회비는 매 회계연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 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12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 조 (상벌 규정)

- (1) 포상 - 본회의 운영에 큰 기여를 한 회원이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 (2) 징계 -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교민사회에 법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본회에 누를 끼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3) 징계의 종류는 공개사과요청 및 경고장 발부, 6개월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처분 등으로 구분한다.
- (4) 징계 전에 당사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징계 시는 총회에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제 13 조 (구성)

- (1) 임원회는 최소 5인으로 구성되며 회장 1인, 부회장 1인, 재무 1인, 총무 1인, 서기 1인을 포함한다.
- (2)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
 - (a)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
 - (b) 직무와 역할에 의해 본회의 각부서에서 부서 운영임원으로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

제 14 조 (임원의 의무 - 일반)

- (1) 임원은 선출되거나 임명된 후 가능한 빨리 본회의 정관과 법을 숙지해야 한다.
- (2) 임원은 헌지법을 준수하고 본회의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3) 임원은 본회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4) 임원은 임원으로서 본인의 위치와 임원으로서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본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적절 행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5) 임원은 본 규칙에 의해 부여된 직무 외에 총회에서 결의된 기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15 조 (권한 및 의무 - 세부)

-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의회를 주관하고 그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임원 추천 및 임명권을 갖는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에 한인회 제반 서류 및 재산을 관리 보관해야 하고 재임 중 관리 소홀로 인해 협회에 손해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회장은 한인회 정통성을 계승하여 각종 행사를 주관해야 한다.
-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잔임기간 동안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행정 및 재무 서류를 정리, 관리하고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4) 재무 - 재무는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의 재무 기록이 법에 따라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협회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연례 총회에 제출될 재무제표 작성을 한다.
- (5) 서기 - 서기는 총회 및 연례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본회의 규칙에 따라 정회원의 회의록 및 기타 본회 관련 문서 열람 요청 발생시 관련 문서를 회장의 인가 하에 제공한다.
- (6) 각 부서 운영 임원 - 본회는 필요에 따라 필요부서 및 부서의 운영임원을 추천 임명할 수 있으며 운영임원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단, 당 회계연도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임기에 추가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 (4) 본회의 임원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며, 징계 및 회장이 임명 해지했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 (5) 임원직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회장 및 임원단은 제13조(2)의 자격을 갖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17 조 (탄핵)

- (1) 회장 및 임원이 정관에 규정된 임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개인적 또는 정치적으로 본회를 오용하는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하여 차별되거나 본회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인정될 때 탄핵의 대상이 된다.
- (2) 탄핵을 위한 임시 총회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개최한다. 회원 1/3 이상 참석으로 임시 총회가 성원되며 참석자의 3/4 이상의 찬성인 경우 탄핵이 성립된다.
- (3) 탄핵 결정이 된 임원은 파면되며 민, 형사간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 5 장 총회

제 18 조 (구분)

-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2) 임원회는 정기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 (3) 정기총회의 통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정기총회는 이전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회의록을 확인한다.
 - (b) 회계연도의 협회의 활동 및 연례 보고
 - (c) 전 회계연도에 대한 협회의 재무제표 보고
 - (d) 기타 필요한 의결사항

제 20 조 (임시총회)

- (1) 정기총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총회를 임시총회로 칭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정회원의 10% 또는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 공고에 명시된 것 이외의 안건은 논의될 수 없다.

제 21 조 (의결사항)

- (1)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a)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b) 회장단 선출 및 해임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c)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 (d)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e) 한인회관 관리 기금에 대한 사항
 - (f) 상설기구의 설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g) 사업계획 및 회원의 발의에 관한 사항
 - (h) 회원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 (i)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j)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 조 (소집 및 공지)

- (1)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회장 선거 년도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원수의 10%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은 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일 21일 이전에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4)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사 및 정회원 30명 이상의 공공 서명

으로 발의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 (5) 공고는 반드시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임시총회의 경우 회의에서 고려해야 할 업무의 항목이 명기 되어야 한다.

제 23 조 (대리 또는 위임)

- (1) 정회원으로서 총회 참석이 불가능 할 시, 다른 정회원을 대리인으로 지명, 투표와 발언의 권한을 이임할 수 있다.
- (2)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시,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와 대리인이 서명을 해야 한다.
- (3) 대리인 위임이 허용된 회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리인의 투표를 위임자의 직접 투표로 간주한다.
- (4)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정회원은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 (5) 총회를 시작하기 전 회의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6)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발송된 위임장은 회의 개시 전까지 협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 24 조 (정기총회 의결 정족수)

- (1) 정족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 (2) 정기총회 정족수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의 30% 이상이다.
- (3) 정기총회 시작 이후 30 분 이내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의 개최는 취소되고 휴회 후 21 일 이내에 재개해야 한다.
- (4) 정족수 부족 휴회 이후 회의 재개 시 총회 일시 및 장소에 대해 가능한 빨리 모든 회원에게 공지한다.
- (5) 휴회 이후 재개된 총회에서는 정족수와 관계없이 회의 안건을 결정할 수 있고 28일 동안 공고 후 반대가 없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5 조 (총회 휴회)

- (1) 총회 의장은 회의에 참석 한 대다수의 회원들의 동의 하에 같은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으로 회의를 휴회 할 수 있다.
- (2) 총회가 휴회 되었을 때 총회에서 논의되고자 했던 미결의 안건 이외에 다른 안건을 휴회 이후 재개된 총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수 없다.

제 26조 (총회에서 투표)

- (1) 총회 참석 정회원들은 각 1표씩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 (2) 특별 결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의제 통과는 투표의 과반 수로 결정한다.
- (3) 안건에 대해 투표가 균등하게 나누어 지면 회의 의장은 두번째 또는 결정 투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27 조 (특별결의)

- (1) 협회는 협회의 명칭 또는 목적 변경을 포함한 정관의 세부 내용 변경이나 회원의 징계 등을 위해 투표를 통한 특별 결의를 결정할 수 있다.
- (2) 특별결의안에 찬성하여 총회에서 투표 결과 1/3 이상이 (개인 또는 위임) 투표할 경우 특별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8 조 (결의 여부 결정)

- (1) 제 27조(2)에 따라 총회의 의장은 거수 표결을 근거로 결의안이 다음과 같다고 선언 할 수 있다.
 - (a) 가결
 - (b) 부결
- (2) 의장 선출 또는 휴회에 관한 특별결의안은 총회 당시 상황에 따라 즉시 접수될 수 있다.

제 29조 (총회 의사록)

- (1) 위원회는 각 총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2) 회의록은 회의에서 고려된 업무, 투표가 이루어진 결의안 및 투표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 (3) 또한 각 정기 총회 의사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회의에 참석 한 회원 및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의 이름
 - (b) 회의 의장에게 제공되는 위임장
 - (c) 회원에게 제출된 재무 재표
 - (d) 재무 재표가 협회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대한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를 제공함을 증명하는 2 명의 위원회 위원이 서명 한 증명서
 - (e) 회계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재표와 함께 감사 된 계정 및 감사인의 보고서 또는 검토 보고서

제 6 장 운영 임원회의

제 30 조 (구성)

- (1) 운영 임원 회의는 회장단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운영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회장은 운영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31 조 (기능)

- (1) 운영위원회는 매년 최소 4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

라 회장 또는 운영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32 조 (의결 정족수)

- (1) 운영임원 회의는 최소 4인 이상의 운영 임원이 필요하며 정기회의는 최소 회의 날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 33 조 (의결사항)

- (1)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 (3) 회원 자격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4) 청원 심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5) 한인회 행사 및 간행물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 34 조 (임원회의 회의록)

- (1) 임원회는 각 임원회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2) 회의록은 다음을 기록해야 한다.
 - (a) 회의에 참석 한 임원의 이름
 - (b) 회의에서 고려된 사안
 - (c) 투표가 이루어진 결의 및 투표 결과

제 7 장 재무

제 35 조 (구분)

- (1) 본회의 회계는 일반 회계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36 조 (회계연도)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로 부터 12개월의 기간으로 호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7 조 (수입)

-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가입비 및 연간 가입금(한인회비), 공공기관의 찬조금, 회사금 금융이자 외 임원회의가 승인 한 기타 출처에서 파생될 수 있으며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목적 모금을 할 수 있다.
- (2) 협회의 모든 자금은 협회의 재무 계좌에 즉시 예치되어야 한다.
- (3) 한인회비의 액수는 운영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 38 조 (지출)

- (1) 본회의 재정은 승인된 예산에 따라 사용 관리하며 모든 수입은 본회의 명의 계좌로 입출금 한다.
- (2) 모든 수표, 전자 이체 및 기타 재정 지침은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중 두 사람의 공동결재로 이루어진다.
- (3) 경상 운영 경비를 제외한 모든 특별 운영 경비의 지출은 운영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긴급을 요할 시는 사전 지출하고 추인을 얻을 수 있다.

제 39 조 (재무기록)

- (1)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재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a) 거래, 재무 상태 및 성과 기록 및 설명;
 - (b)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재무 재표.
- (2) 협회는 빅토리아 주 회계법에 근거 기록에 포함된 거래가 완료된 후 7 년 동안 재무 기록을 유지한다.
- (3) 총무는 아래의 사항의 관리 또는 통제해야 한다.
 - (a) 현재 회계 연도의 재무 기록
 - (b) 위원회가 승인 한 기타 재무 기록.

제 40 조 (재무재표)

- (1) 매 회계 연도마다 협회의 재무는 협회의 재무 재표에 관한 법에 따른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2) 하위 규칙 제40조(1)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의 요구 사항 포함된다.
 - (a) 재무 재표의 작성
 - (b) 필요한 경우 재무 재표의 검토 또는 감사
 - (c) 위원회의 재무 재표 인증
 - (d) 협회의 정기 총회에 재무 재표 제출
 - (e) 재무 재표와 보고서, 증명서, 진술 및 수수료와 함께 담당자의 의견

제 41 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1) 회장은 임원회의와 재무를 통해서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인회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에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8 장 감 사

제 42 조 (자격)

- (1) 감사의 자격은 빅토리아 주 한인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의무를 수행한 자로서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제 43 조 (구분)

- (1)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2) 정기감사는 연 1회로 회계연도 정기총회 이전 감사를 지칭한다.
- (3)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정기 감사의 직무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시 정회원 10% 또는 20명 이상의 서명으로 할 수 있다.

제 44 조 (임기)

- (1)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감사의 임기도 시작한다.

제 45 조 (직무)

- (1) 감사는 한인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집행 및 행정 회계를 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 9 장 한인회장 선거

제 46 조 (회장 선거 일시)

- (1)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당해 년도 3월중에 회장이 공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 47 조 (선출방법)

-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출석 및 위임을 받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 (2)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신임 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3)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 (4)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간의 2차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동점표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48 조 (후보 등록)

- (1)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회원이어야 한다.
- (2) 회장 입후보자는 부회장을 선정하고 20명 이상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 (3) 선거관리 위원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 (4) 회장 입후보자는 공고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록은 마쳐야 하며 선거관리 위원장은 이를 3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 (5) 회장, 부회장 후보는 Police Check 및 Bankruptcy Check의 결과를 선거 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시 자격을 상실한다.
- (6) 등록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28일 이내 재 공고한다.

제 49 조 (차기 회장 미선출시)

- (1) 해당기간 동안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현 회장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하여 차기 회장을 임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0 장 한인회 산하 상설기구

제 50 조 (상설기구)

- (1) 본회는 한인회 발전을 위해 신규사업이나 한인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제안으로 특별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임시운영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 51 조 (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안건의 필요에 따라 특정 정회원 또는 비회원을 위촉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세분하여 한 번에 여러 자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2) 현직회장이 한인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을 명예자문위원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3)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4) 전임 한인 회장은 이임 이후 명예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 52 조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 (1) 협회는 1명 이상의 한인회관 관리위원장을 두어 한인회관 관리 위원회를 운영 대여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2) 관리위원장은 한인회장이 임명하며 임원회의 임원이 된다.
- (3) 관리위원장은 임원회의 인준 하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3 조 (한인회장 선거 관리위원회)

- (1) 협회는 직전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선거 전년도 정기총회에서 2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전회장이 선거관리 위원장을 이행하지 못할 시 정기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 (2) 선거관리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의 업무를 이행한다.
- (3) 선거관리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후보에게서 Police Check 및 Bankruptcy Check의 결과를 제출받으며 결격사유 발견 시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4)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까지의 선거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선거 후 7일 이내에 회장 당선자를 공고한 후 그 임기를 종료한다.

제 54 조 (한인회 이사회)

- (1) 각 직능 별 대표자를 한인회 이사로 선임하고 그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
- (2) 이사회는 한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한인회를 적극 지원한다
- (3) 이사회는 한인회의 특별자문기관으로 한인회 의사 결정권은 없다
- (4) 이사회의 임기는 당해 한인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11 장 정관 개정

제 55 조 (정관 개정)

- (1) 정관 개정의 발의는 운영위원회의 또는 정회원 10 %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요구에 의하여 발의된다.
- (2) 회장은 발의안을 총회 1개월 전까지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3) 발의된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회원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4)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부터 구 정관을 대체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장 기타 일반적 사항

제 56 조 (장부 및 기록의 보관 및 감사)

- (1) 본회의 장부 및 기록은 정회원의 타당하고 공정한 요청 시 한인회장의 동의 하에 제공될 수 있다.
 - (a) 총회의사록
 - (b) 재무 기록, 장부, 유가 증권 및 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하여 협회의 기타 관련 문서가 적용된다.
- (2) 본회는 회원의 기밀, 개인, 고용, 상업 또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 협회의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 (3) 협회는 본회의 정관을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및 신청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4) 본회의 기록 열람을 요청한 회원은 협회의 기록을 사본으로 복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그러한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7 조 (협회 해산 및 취소)

- (1) 협회는 특별한 결의로 자발적 해산될 수 있다.
- (2) 협회 설립의 해지 또는 취소의 경우, 협회의 잉여 자산은 협회의 현회원이나 이전 회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 (3) 준거법 133 조에 의거 한 법원 명령에 따라 잉여 자산은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회원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지 않는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 (4) 잉여 자산을 제공할 기관은 특별 결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 58조 (정관 외 사항)

- (1)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59조 부칙 (개정일)

1972년 12월 31일

1980년 1월 26일

1993년 2월 21일

1998년 7월 18일

2001년 7월 21일

2005년 12월 10일

2008년 7월 19일

2009년 7월 18일

2014년 7월 26일

2019년 6월 15일

2020년 7월 26일